

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행정처분 사항 공고

「축산물위생관리법」 제24조제7항 및 제27조제3항제2호 따른 행정처분(직권말소)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(공표)합니다.

□ 공고기간: 2026. 7. 16.(목) ~ 2026. 8. 3.(월)

□ 대 상 자

- 붙임내역 참조

□ 공고사항

- 위반내용: 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하였음에도,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 제24조제2항에 따라 영업의 폐업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함
- 처분내용: 직권말소
- 처분사유: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 제24조제7항 및 제27조제3항제2호
- 공고기관: 인천광역시 서해구 서곶로 307(심곡동) 경제정책과

※ 행정처분(직권말소)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서구청 경제정책과(☎032-560-1903)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

2026년 7월 16일

인 천 광 역 시 서 해 구 청 장

